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3

발의연월일: 2024. 6. 27.

발 의 자:전재수・이기헌・허 영

신영대 · 김정호 · 민홍철

김태선 · 복기왕 · 위성곤

이학영 · 허성무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강국인 대한민국은 그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전문해사법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해사 법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영국·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해 왔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양분쟁 발생 시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고, 해사소송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해 운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해사법원을 해양도시인 부산광역시에 설치하여 국내해사분쟁 처리의 전문·신속·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4조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회생법원"을 "회생법원, 해사전문법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사전문법원의 설치지역은 해양도시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해사전문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1

별표 1의 수원고등법원란 다음에 해사전문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해사전문법원	부산광역시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따라 해사전문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날 해사전문법원이 아닌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별표 11] 해사전문법원의 관할구역

명칭	관할구역
해사전문법원	전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	제2조(설치) ①
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	
원, <u>회생법원</u> 과 지방법원의 지	회생법원, 해사전문법원
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u>다만, 해사전</u>
	문법원의 설치지역은 해양도시
	를 원칙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	제4조(관할구역)
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	
·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	
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	
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	
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	
구역을 제외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해사전문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1